

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

제정 2021. 2. 19 조례 제329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4조에 따라 안양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안양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문화도시”란 문화예술·문화산업·관광·전통·역사·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문화 창조력 강화를 통해 일상에서 문화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정을 추진할 때에 문화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안양시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지역적·국제적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1.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
 2.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 3. 문화예술·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
 4. 문화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5.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·추진체계·재원에 관한 사항
 6.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, 공청회 및

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설치 등)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문화도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문화도시에 관한 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종합계획의 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
3. 문화도시 정책의 연구개발
4.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.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문화, 예술, 역사, 도시계획,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문화·예술 분야에 탁월한 성과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
3.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8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망, 국외이주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회 회의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3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
4.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1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 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·장소·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,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

제12조(수당 등)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사업의 위탁 및 보조)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